

# 고성군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3070호)

#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. 3. 13.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: 2026. 3. 13.

다. 상정·의결일자: 2026. 3. 25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복지지원과장 천미옥)

#### 가. 개정이유

- 1)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(2021. 7. 20.)으로 대변기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불법촬영 금지 홍보 활동으로 변경하여 불법촬영 없는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환경을 조성
- 2)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의견 반영

#### 나. 주요내용

- 1) 불법촬영 예방계획 내용 중 안심스크린 설치 등을 삭제하고 불법 촬영 금지 홍보로 개정(안 제4조제2항제5호)
- 2) 불법촬영 예방 시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시 성별을 구분하여 조사 항목을 작성하는 단서 신설(안 제6조)

#### 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
- 2)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3) 합 의
  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    - 개선의견[복지지원과-8389(2026. 2. 23.)호]

#### 4) 기 타

- 입법예고: 2026. 2. 10.~2026. 3. 2.(20일간)
-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### 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허수은)

#### 가. 주요 검토내용

- (안 제4조제2항제5호) 불법촬영 예방계획의 ‘안심스크린 설치 등’ 을 ‘불법 촬영 금지 홍보’ 로 변경하는 것은, 상위법령에서 이미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(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, 2023. 7. 21. 시행).
- (안 제6조) 실태조사 항목을 성별로 구분하도록 규정하여, 성별영향평가를 반영하고 조사 및 통계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함.

#### 나. 종합검토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불법촬영 예방 정책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의 충돌 우려가 없고 자치입법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정이므로 시행 과정에서 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없음

#### 5. 토 론: 없음

#### 6. 심사결과: 2026. 3. 25. 원안가결

#### 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#### 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